사회복지법제와실천 (09주~14주)

담당교수 : 김윤재

사회복지법제와실천 목차 | Contents

| 09주 | 01차시 |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1) : 초기 ~ 김영삼 정부 … 003 |
|-----|------|-------------------------------------|
| 09주 | 02차시 |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2) : 김대중 ~ 윤석열 정부 013 |
| 10주 | 01차시 | 사회보장기본법의 이해 021 |
| 10주 | 02차시 |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과 임무032 |
| 11주 | 01차시 | 사회보장급여법의 이해044 |
| 11주 | 02차시 |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057 |
| 12주 | 01차시 | 사회보험법의 이해 067 |
| 12주 | 02차시 | 사회보험법과 판례 081 |
| 13주 | 01차시 | 공공부조법의 이해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099 |
| 13주 | 02차시 | 의료급여법과 긴급복지지원법112 |
| 14주 | 01차시 | 사회서비스법과 사회복지사업법124 |
| 14주 | 02차시 | 대인서비스법 등 개별 서비스법의 이해136 |

| 제9주차 1차시 | | | | |
|----------|--|--|--|--|
| 강의주제 |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1) : 초기~김영삼 정부 | | | |
| 학습 목표 | 1. 196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박정희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기술할 수 있다. 3.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4.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 | |
| 학습 내용 |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2. 제3 및 제4공화국의 사회복지법 3. 제5 및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법 4.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법 | | | |

[학습1]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1.1. 삼국시대

- ① 왕은 천재지변 등으로 백성들이 고난을 겪을 때, 통치차원에서의 시혜성 사업으로 백성을 구제
- ② 신라 제2대 남해왕 15년(A,D. 18년), 기근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을 때 국고로 구제
- ③ 백제 온조왕 32년(A.D. 14년), 한재로 굶주린 백성을 위하여 곡물을 베품
- ④ 고구려 고국천왕 16년(A.D. 194년), 진대법의 실시로 춘궁기에 가족 수에 따라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 때 갚는 방식의 제도 운영. 이것이 고려 때는 의창제도로, 조선시대에는 환곡제도로 연계 시행됨
- ⑤ 사궁구휼은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 등을 구제하는 제도로 군주들이 친히 방문하여 위로

- ⑥ 대부분의 삼국시대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한 구제를 실시 창제는 삼국시대 공통의 구제제도로, 양곡을 비축해 두는 창고를 의미한다. 부락별로 곡창을 설치하고, 질병, 풍수해, 전란 시에 양곡을 방출하는 제도
- ① 왕의 책기는 각종 재난에 대한 왕 자신의 부도덕으로 근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법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동자의 보호와 기초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동기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병든 자와 무의 탁한 노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구제 사업을 실시한 것도 현대 공공부조법의 이념에 접근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구휼사업이 법으로 제정되기도 했으나 지속적이지는 못했고, 또한 제도화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

1.2. 고검시대

성립 초기부터 훈요십조(농민들에게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 해주는 제도)로 민심을 얻고 국부안민을 이루었다. 백성의 조세, 부역을 경감하고 의창제도를 통하여 농민구제를 실시하였으며, 그 후 역대 여러 왕들은 선왕의 훈 요를 경국제민의 강령으로 삼아 구제 사업을 장려하였고 각종 재해로부터 빈민을 구제, 보호

- ① 은면지제는 부역자에게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 ② 재면지제는 천재지변 때 형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
- ③ 환과고독진대지제는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에게 양곡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
- ④ 납속보관지제는 흉년, 재해 시 금전을 상납 받고 관직을 주는 것으로, 이는 국가 재정을 보충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따라서 구휼과는 거리가 있음
- ⑤ 성종 5년(A.D. 986년), 의창제도 신설, 곡가 조절을 위하여 춘궁기에 창곡을 내어 싸게 팔고, 추수기에는 고가로 곡물을 구입,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
- ⑥ 상평창은 물가조절기능과 구빈의 두 가지 기능을 담당
- ③ 동서대비원은 환자의 치료와 빈민구제를 담당. 현대의 병원과 복지시설을 겸한 구료기관

⑧ 고려 예종 4년(A.D. 1109년), 가난한 백성 구제를 위하여 구제도감과 혜민국 설립, 혜민국은 국립의료기관으로 서민을 위한 의료기관 구제사업의 특징은 납속보관사업이라는 법을 통하여 국가재정의 고갈, 흉년 시 빈민, 질병자들을 위한 재원 조달의 확보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미 공공부조법적 측면에서 보면, 빌린 곡식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빈민에게는 식량 이 외에 솜, 베, 소금 등의 생활필수품도 지급, 가난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자에게 장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현대 공공부조법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

1.3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구제사업은 왕의 책임을 강조하는 왕도주의에 따라 시행 풍수해, 한해와 같은 자연재해 또는 기타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이나 빈민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들을 구제하여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

- ① 관곡으로 빈민구제를 조직화, 체계화하여 창제를 운영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상평창, 의창, 사창이 있음
 - 의창과 사창은 평상시 곡물을 대출하고 추수 때 1, 2할의 이자를 받아 그 이자로 빈민을 돕는 제도로서, 숙종 때 100호 단위로 시민이 공동으로 창고를 설립하고 공통책임하에 운영하였으며 동시에 어사가 지도・감독
- ② 빈민구제는 구제의 신속을 중시하고 일차적인 구빈행정 실시책임은 지방관이 됨
 - 중앙정부는 수시로 구제에 대한 교서를 내리며 필요한 관계법 제정 공포, 지방 구빈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것
- ③ 조선시대 구제제도 : 비황제도, 구황제도, 구료제도로 구분
- ④ 비황제도(창제도): 상평창, 의창(환곡), 사창 등의 창제가 있었음 (곡식을 빌려주고 갚게 하는 제도)
- ⑤ 구황제도 : 사궁(환과고독)에 대한 보호, 노인보호사업, 음식제도 등
- ⑥ 구료제도(의료제도)는 전의감, 혜민서, 동서대비원, 제생원 등 다양하게 의료 사업과 구빈사업을 병행 시행. 또한 의료구제 외에도

무속 등의 민속적 요법을 다양하게 전개. 이 시기의 사회복지법은 재원 조달과 관련해 관곡의 부족분을 부유한 민간인으로 하여금 곡물을 납입하게 하여 재원으로 충당하게 한 것은 현대의 공공부조법과 유사한 내용

- ① 노인보호사업으로 기로소는 태조 3년에 설립하여 정2품 이상,
 70세 이상 노인의 놀이장소로 사용하였는데, 일종의 경로당과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세종 8년에 양로원을 제도화함
 치사제도는 문종 2년에 생긴 제도로, 나이 많은 벼슬 자가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 나는 것으로, 오늘날의 해고를 위한 정년제와는 의미가 다르며 경로의 의미가 있었음.
 국가에 경사가 있거나 지방순회 시 왕이 걸식자와 노인에게 향연을 실시
- 용 조선시대의 빈민구제 제도들의 특징
 - 첫째. 왕도정치에 의해서 빈민구제를 왕의 책임으로 인정
 - 둘째, 일차적 구빈 행정은 지방관이 책임을 지고 있었고 중앙정부는 구호관계에 관한 법규정과 지도·감독
 - 셋째, 구호정책이 더욱 세분되어 조직화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이전에도 공통으로 구제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음, 이러한 구제 제도들은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전사라는 점에서 그 의의

1.4 일제 강점기

- 우리나라가 1910년 국권침탈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래의 구제사업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1921년 조선총독부 산하의 내무국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지도와 통제를 전담하게 되었으나 구호시책은 극히 부진
- 일본은 1929년 구호법을 제정하여 자국에서 1932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2년이 경과한 1944년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여 시행
- 조선구호령의 주요 내용
 - 첫째, 구호대상은 ① 65세 이상 노약자, ② 13세 이하의 유아, ③ 임산부, ④ 병, 상병, 그 외 정신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노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
 - 둘째, 구호의 종류는 ① 65세 이상의 노쇠자, ② 의료, ③ 조산,

- ④ 생업부조 등 네 가지의 구호와 특정한 피보호자에게는 매장부조도 급여 실시
- 셋째, 조선구호령은 국가가 국민의 빈곤·불구·폐질 등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선언하여 국민생활을 보장할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하여 평가
- 넷째, 일제치하에서 국민들을 회유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맥락에서 제정된 명목상 규정
- 다섯째, 조선구호령이 미군정 기간과 정부수립 이후 1961년 생활보호법 이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근거가 된 기본법이 었다는 점과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법 형식의 실정법이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역사의 의의

1.5 미군정 시대

-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고 1945년 광복을 맞이한 후 미군정이 3년간의 신탁통치
- 조선구호령은 광복 후 1946년 후생국보 제3호로 이어져서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그 역할을 계속 후생국보 제3호의 주요 내용
- 구호대상은
 - ① 65세 이상의 노령자
 - ② 6세 이하의 부양할 어린이를 가진 자
 - ③ 13세 미만의 아동
 - ④ 불치의 병으로 신음하는 자
 - ⑤ 분만 시에 원조를 해야 하는 자
 - ⑥ 정신적·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 등
- 후생국보는 재해민과 피난민 구호계획을 발표, 식량, 의료, 연료, 긴급의료, 매장, 차표 등의 편의를 제공, 이재민, 피난민, 빈궁자, 고아 등에 관한 응급처리와 임시구호를 규정
- 미군정 사회복지법의 특징
 - → 미군정기 사회복지법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이나 장기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도기의 사회적 혼란에 대체, 기아의 방지, 최저생계유지, 의료보호 등에 중점을 둔 응급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특징

→ 그러나 미군정 기간 동안 사회복지정책 중 미성년자노동보호법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폐기되기 전까지 아동의 복지 증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역사적 의의

1.6 제1공화국(1948.8.15.~1960.6.14.)

- ① 1948.5.10. 남한지역만 총선거 실시, 제헌국회 구성
- ② 1948.7.17. 제헌헌법 공포
- ③ 1948.7.20. 간선제로 정·부통령 선출, 제1공화국 탄생
- ④ 1948년 국민 1인당 GNP 80US\$
- ⑤ 1950.6.25. 전쟁 발발
- ⑥ 식량난, 경제적 고난 극복 노력
- ⑦ 외국 원조로 경제 회복 노력
- ⑧ 1960.3.15. 부정선거, 4.19 혁명, 집권 12년 만에 제1공화국 붕괴
- 9 사회복지 관련법 제정
 - 제헌헌법 제19조에서 생존권 규정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정
 - 후생시설 설치기준령(50.2월) : 시설의 무분별 난립 방지
 - 후생시설 운영요령(52.10.4.) : 시·도에서 시설 지도 감독
 - 근로기준법 제정(53.5.1.)
 - 어린이헌장 제정(1956)
 - 사회복지전문인력 단기양성소 설치 : 사회복지 종사자 양성
 - 공무원 연금법 제정(1960.1.1.)

1.7 제2공화국(1960.6.15.~1961.5.15)

- ① 1960.6.15.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 실시
- ② 정부의 무능. 사회적 혼란 가중
- ③ 1960.5.16. 군사혁명(쿠데타) 발생
- ④ 외국원조에 의한 고아원 중심의 사회복지 운영

2. 제3 및 제4공화국의 사회복지법

2.1. 제3공화국

- 왕은 천재지변 등으로 백성들이 고난을 겪을 때, 통치차원에서의 시혜성
- 1961.5.16. 군사혁명, 정권 교체
- 우선 민생고 해결을 위한 국가종합개발정책 수립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군사정부, 헌법 개정(1962.12.17.), 1963.6.15. 제3공화국 탄생
- 도시화 및 공업화 현상 사회문제 발생(도시빈민, 가출, 비행, 미혼모, 주택문제 등)
- 사회복지분야 투자 소극적 태도 유지 경제개발 우선정책 추구
- 주요 사회복지 관련법 제·개정
- 생존권 규정 개정(헌법 제30조)
 - ☞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 제3항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헌헌법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
- 갱생보호법 제정 : 범죄자 재범 방지, 자활독립 조성
- 군사원호보상법 제정 : 한국전쟁 후 상이군경, 전몰군경 및 유가족 보호
- 윤락행위 등 방지법 : 윤락행위 방지, 인권존중 기여 목적
- 생활보호법 제정 : 공공부조법률 역할, 조선구호령 폐지
- 아동복리법 제정
-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 고아의 해외 입양 합법화
- 산업재해보상법 제정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의료보험법 제정 : 임의가입 유도, 유명무실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의 증진

2.2. 제4공화국

- ① 1970년 초.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개정
- ② 제1차, 제2차, 제3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수행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사회개발정책 포함
- ③ 산업화, 도시화 형성
- ④ 절대빈곤에서 탈피, 고도의 경제성장 달성
- ⑤ 최초의 노동운동 시작
- ⑥ 외원단체 철수 시작,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증가
- ⑦ 사회복지 관련법 제·개정
- ⑧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 ⑨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미시행, 1986.12.31. 국민연금법 전면 개정
- ⑩ 의료보험법 개정 : 500인 이상 사업장 강제가입, 1977.7.1.
- ⑪ 의료보호법 : 생활 곤란한 자 의료보호 실시

[학습2]

3. 제5 및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법

3.1. 제5공화국

- 1980.5.17. 군사 쿠데타, 제5공화국 탄생(1980.10.27.-1988.2.24.)
- 선 성장, 후 분배 정책 고수
- 각종 사회문제 부각 : 빈부격차, 지역 개발격차,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 민주화 요구 거셈, 반정부 투쟁, 정부불신
- 국정목표 : 복지사회의 구현
- 지표 : 민주주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 구현, 교육혁신 및 문화창달
- 제5차 경제개발계획 수립 시행
- 사회복지 관련법 등

- 시설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복지와 재가복지 강조 시작
- 헌법의 생존권의 강화 : 종전,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로 개정하면서 국가의 책무를 더욱 강조
-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
- 아동복리법 →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노인복지법 제정
- 국민복지연금법 폐지, 국민연금법 제정 시행(1988.1.1.)
- 최저임금법 제정(1988.1.1.)
- 의료보험법 개정,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가입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증진 책임 명문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임(1-3급)
- 생활보호법 개정, 생활무능력자 +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한 자 추가 보호

3.2. 제6공화국

- 1987.10.29. 제9차 헌법개정. 대통령 직선제
- 제13대 노태우 정부(1988.2.25. 1993.2.24.) 출범
- 제14대 김영삼 정부, 제15대 김대중 정부
- 제16대 노무현 정부, 제17대 이명박 정부
- 제18대 박근혜 정부, 제19대 문재인 정부
 - * 00공화국 : 헌법이 바뀔 때마다 숫자를 바꾸고, 헌법이 바뀌기 전까지 는 동일한 공화국 호칭을 사용
- 노태우 정부 사회복지 관련법 등 업적
- 보호관찰법 제정
- 모자보건법 제정
- 청소년기본법 제정
- 고령자촉진법 제정
- 의료보호법 개정 :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 개막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에 사회복지전담기구 설치

4.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법

-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 고용보험법 제정 시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국민연금법 개정 : 농어촌지역 자영업자 및 농어민 확대 적용
- 사회보장기본법 :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폐지,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 정신보건법 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제도 도입(2003),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
-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 지역의료보험조합,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 조합 통합 관리
- IMF 발생, 국가경제 붕괴, 대량 실업자 발생, 구조조정 등 사회문제 심각

| 제9주차 2차시 | | | | |
|----------|---|--|--|--|
| 강의주제 |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2) : 김대중 정부 ~ 윤석열 정부 | | | |
| 학습 목표 | 1.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기술할 수 있다. 3.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 | |
| 학습 내용 | 1.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법 2.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법 3.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법 4.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법 5.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법 6.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법 | | | |

[학습1]

1.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법

한국의 사회복지 공급체계는 고성장-저실업구조하에서 기능하도록 계획. IMF체제에서 예상되는 '제로성장-대량실업', 나아가 저성장-고실업구조의 만성화와 여기서 파생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계파탄, 빈곤, 범죄등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음. 따라서 시장소득과 기업에 의한 복지공급체계가 약화·붕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복지공급 메커니즘을 구축하였음

- 포괄적 사회안전망의 구축 : 사회보험의 전국민 확대와 소득보장제도의 정비
- 국민복지 기본선의 정립 : 사회복지급여의 적정성 확립
- 사회복지예산의 확대 : 국방비 규모의 재조정
- 효율적 행정체계의 구축 : 4대 사회보험 통합관리와 서비스 행정체계의 구축

- 사회복지에서의 민주주의 확립 : 사회보장제도와 기금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 범부처. 범국민적 '사회보장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개혁추진
 - ① 김대중 정부(1998.2.25.- 2003.2.24.)
 - ② 국민연금법 개정 : 전 국민 국민연금 시대 개막(1994.4.1.)
 - ③ 경로연금(1998)
 - ④ 노사정위원회(1998)
 - ⑤ 주 5일 근무제(2002)
 - 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전 국민 포함 건강보험시대 개막(2000.7.1.)
 - ①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u> : 1961년 생활보호법 폐지, 최저생활 보장 과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었음
 - ⑧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 장애인 직업안정 도모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1998)
 - 9 건강보험 조직 통합(2000)
 - ⑩ 모든 직장 산재보험 적용(2000)
 - ⑪ 의료급여법 전면 개정 시행(2001.5.24.)
 - ②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한시법으로 시행(2006.12.31.까지 적용)
 - 노무현 정부 때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2006.12.30.)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계속 추진
 - 김대중 정부는 1990년대 후반 금융 위기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사회보험의 구조 개혁 및 복지재정 확대를 통해서 한국 복지국가의 시발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노무현 정부(2003~2008) 역시 참여 복지의 기조 아래 복지확장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함

2.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법

- ① 노무현 정부(2003.2.25.-2008.2.24.)
- ② 영유아보육법 개정 : 국가 책임 인정,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보육시설평가인증제 도입,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행 :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기반을 조성, 사회복지 증진 체계 마련
- ④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시행 :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 지원
- 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함.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의료지원, 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 제공
- 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 시행 :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 산부 등)를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① 저출산 고령화기본법 제정 시행 :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⑧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시행
- ⑨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시행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긴급지원을 통한 주부식비 제공
- ⑩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푸드뱅크 사업 전국적 시행
- ⑪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차상위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
- ③ 건강보험 재정 통합(2003)
- (4) 소득인정액 시행(2003)
- ⑤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설립(2007)
- (6) 노인일자리사업 실시(2004)
- ① 기초노령연금 시행 : 만 70세 이상 노인 연금지급(2008.1.1.)

3.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법

- 이명박 정부(2008.2.25.-2013.2.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2008.7.1.)
- 근로장려세제(2008)
-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가동 (2010)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 한시적인 법을 영구적으로 개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
- 장애인연금법 제정, 시행 : 경제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무기여 연금 지급(2010)
- 0~2세, 만 5세 아동 무상보육(2012)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2011.10.5.) : 장애인의 삶의 질향상 목적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시행 :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시행(2012.1.1.)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2012.6.8.)
- 치매관리법 제정 시행 : 국가적 차원에서의 치매 관리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시행(2012.8.5.) : 국내외 입양 법원 허가 사항 규정, 피입양자의 입양정보 접근권, 국내 입양 우선 추진의무화, 아동 출생 1주일 입양 동의 절차 진행 가능
-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 : 국민의 보편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1.26.) : 인권침해 예방, 시설투명 운영 등 목적

[학습2]

4.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법

- 박근혜 정부(2013.2.25.-2017.3.10.)
- 기초연금법 개정 : 만65세 이상 빈곤노인소득보장 목적으로 개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2014.12.30.):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개념 도입하 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책임을 국가에 두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기초보장 맞춤형 급여(2014) 절대적 빈곤선 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기준인 중위소득으로 설정,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음
- 주거급여법 제정 시행 : 주거권의 보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시행(2014.1.28.) :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 예방, 아동학대 처벌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선정 시행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5.20.) : 발달장애인의 지속적 보호와 지원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 증가,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정
-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장애를 보조하는 보조기기 필요 인구 증가, 기기의 품질관리, 유통체계 등을 관리하여 장애인 및 노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함

5.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법

- ① 문재인 정부(2017.5.10.-2022.5.9.)
- ② 복지국가 성격 : 포용적 복지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제시

-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함
-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비전, 9대 전략을 제시(2018)
- ③ 복지국가 규모 : 복지 팽창기
- ④ 사회적 과제 : 감염병 극복, 생태 전환
 - 한국판 종합뉴딜계획을 발표. 이듬해 7월에는 이를 보완한 한국판 뉴딜계획 2.0를 발표함(2020)
- ⑤ 주요제도(사회보험)
 -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 상병수당 도입 결정(2020)
- ⑥ 주요제도(공공부조 및 사회수당)
 - 최초 보편수당인 아동수당(2018.9)을 도입하고, 노인·사회서비스 일자리 큰 폭 확대(보건복지부, 202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완화 로드맵 이행 및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함
 -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 치매 노인에 대한 가족 부담을 줄이고, 기존 노인돌봄 사업을 삶터 중심으로 통합하고 응급안전, 쉼터 확충 등 지역사회 돌봄 강화(2021)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의 대폭적인 확대와 첫만남이용권 신설 (2021)
 - 노동권과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실업급여 확충,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 ⑦ 주요제도(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원 설립 (20019)
 -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19. 4개소 → 22. 17개소),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선도사업 실시(16개 시군구) 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추진(2022)
- ⑧ 주요제도(기타) : 주 40시간 근무제(2018), 고교무상교육(2021), 국민취업지원제도(202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2020)

- 9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 사회보장제도 사이의 정합성을 기하는 접근이 필요함(제도의 도입과 성장의 정합성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 개편 역시 시급한 과제임(서비스의 적절성과 재정효율성을 함께 도모해야 함)
 - 시장의 양극화를 재분배를 통해서 해소했으나, 노동시장의 분배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노동시장을 통한 분배의 양극화 심화를 차단하는 접근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함)
 - 적극적 사회정책을 폈으나,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올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였음
 -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임
 - 사회적 취약 계층을 포착하고 지원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6.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법

- ① 윤석열 정부(2017.5.10.-현재)
- ② 윤석열 정부의 성격 : 국가목표의 특성
 - 윤석열 정부의 성격은 제시한 국정목표로 파악될 수 있다. 인수위는 정부의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임
 - 이것은 경제성장 중심인 보수와 분배 중심인 진보의 국가목표를 모두 수용하고자 하는 시도임(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5)
- ③ 윤석열 정부의 복지모델 : '약자복지모델'을 지향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대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110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함
 - 약자복지모델은 자생복지의 전통을 따르는데 잔여적 복지모델의 이념적 기반이었음
- ④ 사회보장정책 관련 주요 국정과제는 4가지 (제20대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2022, 81-100)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과제번호 42번);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국정과제는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안정성과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함

-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강화(43번):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 상병수당, 기초연금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임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46번) :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의 개선을 위한 것임
-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53번) : 고용보험의 개선을 위한 것임
- ⑤ 사회복지분야 정부예산안 증액된 세부사업액 : 24,091,480(백만 원) 증가됨
- ⑥ 윤석열정부의 예산안에 반영된 복지모델 :
 - 정부 재정과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우선적 목표 : 2023년 예산안에서 정부의 수입은 40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607조 원으로 전년 대비 5.2%만 증가하여 수입이 지출보다 높아짐(기획재정부, 2022, 1).
 - 이는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탈피하여 건전재정으로 전환의 목표를 주로 지출을 감축시켜 달성하고자 함을 보여주는 것임 (기획재정부, 2022, 1).
 - 기초보장과 가족지원제도의 유지 및 강화 : 약자복지모델의 다음 특징은 취약 계층을 위한 현금복지의 확대임
 - 고용 사회서비스에서 민간의 역할 확대 : 약자복지는 고용과 사회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민간역량을 활용함

| 제10주차 1차시 | | | | |
|-----------|---|--|--|--|
| 강의주제 | 사회보장기본법의 이해 | | | |
| 학습 목표 |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입법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이념 및 주요 용어를 제시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
| 학습 내용 |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2.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이념 및 주요 용어 3.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 | | |
| | 4. 사회보장수급권 | | | |

[학습1]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 우리나라는 1963년에 전문 7개조로 구성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서 사회보장을 사회보험에 의한 제 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라고 정의
- 따라서 이 법에서의 사회보장의 범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만 포함
- 법률은 1995년에 폐지되면서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사회보장을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
- 이 법은 2012년에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정의

-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출산과 양육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추가됨
- 사회보장의 정의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태아기에서 노년기까지 걱정 근심 없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정 프로그램을 통해 현금과 현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회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박진화, 2018).

① 헌법 제34조 생존권 명시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 ②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의 하위법률, 사회복지 관련법들의 기본법
- ③ 제3공화국,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유명무실한 법
- ④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으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기 위함
- ⑤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 공공부조, 사회보험 및 사회서비스
- ⑥ 개정 사유
 - 현재 어려 부처에서 사회보장정책을 관장함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재정립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 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함 (안 제2조)

- 나.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출산, 양육을 사회적 위험으로 포함하여 보호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사회서비스로 포괄하여 확대하며,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인 평생사회안전망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복지사회 실현의 토대를 마련함(안 제3조).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라.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며 기본계획 및 심의 조정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개선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0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평생 안전하게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사회서비스 보장, 소득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안 제32조)
- 아.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37조).

자.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안 제38조)

1.1. 국외에서의 정의

- 사회보장에 대한 영국의 백과사전에서는 "실업, 노령, 질병, 사망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 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을 말한다."라고 정의
- 베버러지(Beveridge, 1942))는 사회보장을 "실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되거나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가장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나아가 출생, 사망, 결혼 등에 관련되는 추가적 지출을 보충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한다"라고 정의
-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는 사회보장을 포괄적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등 체계적으로 분류
- 1984년에 발간한 보고서(ILO, 1984)에서는 사회보장을 "질병, 출산, 재해, 실업, 장애, 노령, 사망에 따른 소득의 상실 또는 실제적 감소에 의해 야기되는 경제사회적 고통을 사회가 공공대책에 의해 보호하고 의료보호와 아동수당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
-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Intera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006)에서는 사회보장을 "법령이나 기타 강제적 제도에 근거해 도입된 프로그램으로서 개인이 노령, 가장의 사망, 근로능력 상실, 장애, 실업, 아동 부양이라는 사회적 사건을 겪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정의
- 미국의 사회보장핸드북(Social Security Handbook)에서는 사회보장을 개인과 가족의 물질적 요구를 충족해 주고 저축을 소진할 수 있는 질병치료 비용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며 가족을 유지하도록 하고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라고 정의

1.2. 사회보장의 유사개념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 그리고 사회안전망 등이 있다(이준영 외, 2017).

- ①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 바커(Baker)는 Social welfare를
 - 첫째, 사회유지에 기본이 되는 사회, 경제, 교육, 건강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해 주는 프로그램, 급여 그리고 서비스에 관한 국가체계의 하나이며
 - 둘째, 공동체 또는 사회의 집합적 안녕의 상태다라고 정의 이 정의에 따르면, 사회복지를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하나는 욕구를 충족시키게 해 주는 개입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불안이 없는 안녕의 상태가 그것. 사회보장은 바커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첫 번째 관점과 같은 의미로 행위적 측면(개입행위)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이 가진 자원과 능력으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때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행위적 관점 또는 사회보장이라 할 수 있음.

②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 사회복지정책이 개별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욕구충족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적 개입을 파악하려고 하는 접근방식
- 사회보장은 개별적 대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유형화된 사회복지제도들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적 개입을 파악하려는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
- 관심의 초점으로 구분하자면, 결국 사회복지정책은 대상과 욕구에 주로 관심을 갖고,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할 수 있음

③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s)의 개념은 과거 1990년대 초 동구권의 공산국가들이 붕괴되고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발생된 대규모 실업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MF 등의 국제기구가 제안하였던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사회복지적 조치들을 의미하는 용어로부터 유래
- 그 후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IMF의 구제금융에 대한 조건으로 경제적 구조조정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요청받게 되면서 이 개념이 알려졌는데 그 동안의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를 대신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다. 2012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과 별도로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용어를 도입
-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에 따라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라고 정의 되고 있다(제3조 제5호).

1.3. 사회보장의 내용

- 사회보장법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다양화되고 확대 발전
- 사회보장제도의 초기에는 빈곤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득보장에 국한 되었다가, 점차로 사회변동에 따른 인간 욕구와 문제의 발생에 따라 (이를 사회적 위험으로 볼 수도 있다) 의료보장 그리고 비화폐적 · 심리적 · 정서적 문제에까지 대처하는 경향을 보임.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유형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규정
-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각종의 사회보험에 관한 법(이하 사회보험법), 각종의 공공부조에 관한 법(이하 공공부조법이라고 함), 각종의 사회 서비스법(이하 사회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시행

1.4. 사회보장법의 특성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의 실시와 연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진다(이준영 외, 2017).

- ① 생존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노력
 - 사회보장법은 1930년대 이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선진제국으로부터 정착되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는 신생 독립국가에 확산되어 갔다.

- 특히 이 과정에서 국제조직인 ILO, WHO, 국제사회보장협회 등의 노력이 큰 기여를 하였다.
- 사회보장법은 헌법상의 생존권규정을 법률수준에서 이를 구체화 하여 국민생활에 직접 개입하는 적극적인 국가의 노력으로 간주한다.
-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수준과 내용 및 형태는 국가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모습을 달리할 뿐이다.

②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법

- 사회보장법은 사회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위험의 발생과 욕구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법이다.
- 빈곤 대책으로서 출범한 사회보장제도는 의료보장, 주택, 교육 및 심리사회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내용이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③ 시행의 강제성과 독점적 성향

- 사회보장법의 시행의 강제성과 운영의 독점적 특징
- 사회적 공동체라는 연대의식과 함께 모든 국민을 무차별 평등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시행이 강제성을 지니고 있고 운영 역시 독점적 성격
- 사회보험의 경우 법적으로 가입요건에 해당한 경우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며, 시행도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혹은 국가 감독 하에 독점적 조직이 실행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음
- 사회보장기본법은 글자 그대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
-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새로운 국가의 경제·사회 적 체제에서 미래에 설립
- 사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려는 뜻에서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충족되지 못한 채 입법화된 사실에 더하여, 그 후 30여 년 동안 변화된 사회보장, 사회복지제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법을,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 제반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사회보장법으로 확대 발전시킨 법으로 이해
- 사회보장기본법은 비록 각각의 사회보장 관련법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사회보장법의 모법이자 기본법으로서 위치를 지키고 있음

[학습2]

2.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이념 및 주요 용어

- ① 목적(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념(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③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등과 가정의 책임(사회보장기본법 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 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③ 국민의 책임 (사회보장기본법 제7조)
 -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

- ① 수급권의 개념
 -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 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관계법에 의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② 수급권자

- 사회보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수급권자로 규정
- ③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
 -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
- ④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
 -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신청 가능
 -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
 -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봄
- ⑤ 사회보장급여의 보호(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음.

- ⑥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음.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음.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음.

| 제10주차 2차시 | | | | |
|-----------|---|--|--|--|
| 강의주제 |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과 임무 | | | |
| 학습 목표 | 1.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를 제시할 수 있다. 2.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방법을 기술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 소요재정 준비의 법적 근거 및 권리구제 내용과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
| | | | | |
| 학습 내용 | 1)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2)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방법 3)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4)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및 권리구제 | | | |

[학습1]

1.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1.1.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등(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 26.>.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 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 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사회보장위원회 직무(법 제20조)

-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 2.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 조정한 결과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방법

2.1.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16조)

- ①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는
 -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어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것을 규정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 2.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 6. 사회보장 전달체계
 - 7.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의 추진 방향

-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사회보장의 체감도 저하 →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필요
- 복지욕구 증대에 따른 사회지출 확대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등 재정악화 요인도 증대
 - →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통한 효과성·효율성 제고 필요
-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른 노동-소득-교육-건강 격차확대는 사회 통합성 저해→ 삶의 핵심 영역별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망 구축 필요

<참고> 생애주기별, 핵심영역별 위험과 사회보장

① 노동 : 노동시장에서의 격차해소와 평생학습 훈련체계 구축

② 실업 : 실직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확충

③ 교육 : 인적자원의 역량제고와 창의적 인재육성의 교육체계 구축

④ 일·생활 : 보편적 소득 건강보장체계 구축과 돌봄서비스 확충

⑤ 은퇴 : 안정된 노후를 위한 노추소득 보장체계 확충

2.2. 다른 계획과의 관계(법 제17조)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2.3.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법 제24조)

- 보편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
- 형평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 및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
- 민주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
-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함
- 책임성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 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

2.5. 역할, 참여, 비용, 사회보장전달체계(법 제25조~제28조)

- ① 협의 및 조정과 민간참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비용부담

- 사회보장비용은 국가, 사용자 및 피용자 등의 3자기 부담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 경향. 우리나라는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함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회보장전달체계: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있어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함

2.6. 사회보장제도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사회보장전달체계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있어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요인
- ② 정보의 공개와 비밀의 보호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함
- ③ 설명·상담 및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국민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2.7. 사회보장의 국제적 보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기구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회보장 관련 국제기구로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등이 있다.

| 종류 | 역할 | |
|----------------------|-------------------------------------|--|
| | 1950년 설립된 국제연합은 총회에서 주요 선언이나 | |
| 국제연합(UN) | 권고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사회보장 분야뿐 아니라 | |
| | 여러 분야에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 |
| | 1919년 설립된 ILO는 근로조약이나 권고를 채택함 | |
| 국제노동기구(IL0) | 으로써 근로조건의 국제기준을 실정할 뿐 아니라 | |
| | UN의 경제사회이사회와 협력히여 사회복지에 | |
| | 대하여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
| | 1945년 실립된 세계노동조합연맹은 노동조합의 연합 | |
| | 체인 비정부 민간기구이다. ILO가 UN 관련 국가 간 | |
|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 기구인데 반해 세계노동조합맹은 노동조합의 연합체 | |
| M/112078160(W10) | 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에 대한 태도는 훨씬 진보적이고 | |
| | 노동자의 편에 유리한 내용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 |
| | 있다. | |
| | 국제사회보장협회는 1927년 질병보험을 확대·강화 | |
| | 하기 위해 상실된 각국의 사회보장 관계기관의 국제적 | |
|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 단체로서,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사회보장 관련 | |
| 기세세되고8립되(100/1) |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출판하며, ILO와 밀접한 | |
| | 관계를 갖고 협력하여 국제사회보장의 발전을 위해 | |
| | 노력하고 있다. | |
| | 1949년 설립된 유럽협의회는 회원국들의 사회보장 | |
| |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1961년 유럽사회현장을 채택 | |
| 유럽협의회(CE) | 하였다. 사회보장 권리를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로 | |
| | 규정하고 최소한 ILO의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 수준 | |
| | 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 |
| | 1964년에는 유럽사회보장법전을 제정하였다. | |
| | 유럽국가들 간의 재화, 시람, 자본 및 서비스의 | |
| 유럽연합(EU) | 자유화를 통한 자유로운 공동시장과 궁극적 정치통합을 | |
| 7. 2 2 3 (==, | 목적으로 1993년 11월에 실립되었으며, 사회보장법과 | |
| | 노동법의 통일화도 추진하고 있다. |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ECD는 ILO, WHO 등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고용, | |
| | 노동, 사회 문제, 사회문제, 교육, 경제정책 등과 같은 | |
| |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을 | |
| | 추진하는 기구이다. | |

2.8.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 선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국제적 선언을 다수 채택하였는데, 대서양 헌장(1941년), 필라델피아 선언(1944년), 대서양 헌장(1941년), 세계인권 선언(1948년), 사회보장헌장(1961년), 유럽사회보장법전 (1964년) 등이 있다. 이 선언문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

| 국제선언문 | 내용 | | |
|------------------------|---|--|--|
| 대서양 헌장 (1941년) | -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이 대서양에서 회담을 가져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 재건 방침에 대한 내용을 담은 헌장이다. -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선언하였으며. 이후 서방국가들이 사회보장을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 |
| 필라델피아 선언 (1944년) | 필라델피아에시 개최된 IIO 총회의 사회보장원칙 및 전쟁에서 생기는 제반 문제를 심의하여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의료보호에 관한 권고, 군대 및 전시 고용으로부터 풀려난 자에 대한 소득보장 및 의료에 편한 권고를 채택하였다. | | |
| 세계인권 선언 (1948년) | UN의 제3회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림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선언이다.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선언하였다. | | |
| 사회보장헌장 (1961년) | 세계노동조합연맹이 모스크바 제3회 세계노동자대회에서 채택한 헌장이다. 사회보장을 노동자의 권리라고 선언하고 여덟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① 적용대상의 포괄성 원칙 ②사회적 위험의 포괄성 원칙 ③ 의료의 사회화 원칙 ④ 최저생활보상 원칙 ⑤ 무차별평능 원칙 ⑥ 권리구제에 대한 원칙 ⑦ 노동자 무각출 원칙 ⑧ 민주적 운영 원칙 | | |
| 유럽 사회보장 법전(1964년) | 유럽 1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협의회에서 시회보장에 관한 최고 기준에 해당하는 유럽 수준의 사회보장법전이다. 이후 1989년에는 유럽 II개국이 12개 조항이 담긴 사회헌장을 채택하였다. | | |

[학습2]

3.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3.1.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법 제22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3.2. 사회서비스 보장(법 제23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3. 소득 보장(법 제24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혐의 및 조정(법 제26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3.5. 민간의 참여(법 제27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6. 사회보장의 장기발전 방향 수립 및 평가

장기발전 방향의 수립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다음과 같다.

-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재원조달방안과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①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해의 시행계획수립을 작성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②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의 평가지침을 매년 1월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 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9월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4.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및 권리 구제

4.1. 비용의 부담(법 제28조)

-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4.2. 사회보장 급여의 관리(법 제30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1.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 3. 사회보장급여의 부정 · 오류 관리
- 4.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주차 1차시 | | | |
|-----------|--|--|--|
| 강의주제 | 사회보장급여법의 이해 | | |
| 학습 목표 |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법의 목적, 기본개념 및 기본원칙을 기술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법의 절차를 열거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 | |
| | | | |
| 학습 내용 | | | |

[학습1]

1.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배경

-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36호, 2021. 7. 27., 타법개정]
- ② 입법배경 제정이유
 -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전달체 계가 중앙행정기관별·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 운영되어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같은 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이 중복하여 제공되거나 14년 2월 26일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보편적 · 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 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부적인 실행방안과 절차가 미비하여 적절한 조사와 지급 이후의 사후

관리의 미흡으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 기되어 옴

- 또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 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사회보장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구됨
-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신고의무,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직권신청, 보호계획 수립·지원, 상담·안내·의뢰 등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 또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간 정보의 연계를 통하여 복지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일성을 기하여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③ 주요 내용

- 가. 사회보장급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제도를 통하여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제2조및 제3조).
- 나. 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급여의 결정·제공 등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규정함(제5조부터 제 9조까지).

- 다.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급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보호를 강화함 (제5조 제2항 및 제15조).
- 라.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전가구, 보험료 체납 가구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및 제14조).
- 바. 지원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에 관한 상담· 안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전화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 사. 수급자격의 결정 등 보장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및 행정 소송 절차를 명문화함(제17조).
- 아. 사회보장급여 제공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급여의 적정성 확인 조사, 급여의 변경·중지 및 환수 등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함(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 자.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 정보의 표준화, 시스템 이용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전담기구로 사회보장정보원을 두는 한편, 사회보 장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 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관 간 협의·조정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시스템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함(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 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대책 수립·시행, 정보 침해행위 금지 및 시정요구, 시스템 복구조치, 정보의 파기,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보호 규정 위반 시 고발·징계 요구, 과태료와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49조,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 카. 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의식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 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보장위 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는 한편,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에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보장 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마련함(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 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차이를 최소화기 위하여 예산배분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분야의 복지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사회보 장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접수, 자격조 사 및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 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제51조 및 제52조).

2. 사회보장급여법의 목적, 기본개념 및 기본원칙

- ① 사회보장급여법의 목적(제1조)
- ②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사회보장급여법의 기본개념(정의) (제2조)
 -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 2.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4.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④ 기본원칙(제4조)

-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급여범의 절차

3.1.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제5조)

-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 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
 - 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제6조)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1.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 2.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3.3. 수급자격의 조사(제7조)

-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 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 2.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 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 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 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등(제8조)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 무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 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 서 "금융정보"라 한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 에서 신용정보라 한다)
 - 3.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보험정보라 한 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금융정보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제9조)

- ① 보장기관의 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하되,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 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결정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서면(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인무(제13조)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함.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개정 2023. 6. 13.>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와 제35조의 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3.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의 의료기사
-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 7.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 8.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11.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1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 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 소의 장과 그 종사자

-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9.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1.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 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4. 「전기사업법」, 「수도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검침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종사자
- 25.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의 납부·징수나 연금·보험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한 민원 또는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
-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시행일: 2023, 12, 14,] 제13조

[학습2]

4.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4.1.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제19조)

- ①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4.2. 수급자의 변동신고(제20조)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3.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제21조)

-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따라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종류·지급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으로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그 종류·지급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는 서면 (수급자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4.4. 사회보장급여의 환수(제22조)

- ① 수급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 (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그 사회보장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징수 및 반환명령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주차 2차시 | | | |
|-----------|--|--|--|
| 강의주제 |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 |
| 학습 목표 | 1. 사회보장정보의 중요성과 해당 기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보장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수립방법을 기술할 수 있다. 3.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4. 사회보장법의 보칙과 벌칙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 |
| | | | |
| 학습 내용 | 1. 사회보장정보 2. 사회보장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3.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4. 사회보장법의 보칙과 벌칙 | | |

[학습1]

1. 사회보장정보

1.1. 사회보장정보(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1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1.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기관 및 이용자에 관한 정보
-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관한 정보
-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에 관한 자료
-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에 관한 정보
-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한 정보
-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1.2.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제26조)

- ① 정보보유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그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정보보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정보보유 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보유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1.3.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제6조)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1.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 2.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1.4. 수급자격의 조사(제7조)

-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 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 2.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법인·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법인·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보장기관은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⑦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20. 12. 29.>.

2. 사회보장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2.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8)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법 제36조)

- 1. 지역사회보장 수요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 및 목표
-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8.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 대책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제37조)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인력,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4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제39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를 제47조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3.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사회보장급여법 제45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도 및 시·군·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사회보장급여법 제46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2.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10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사회보장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현황 분석
- 2.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이행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지표(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 등 사회보장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 4.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 다)의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 5.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6. 지역사회보장 수급 분석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 7.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3.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

- ①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4.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 ①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 정관
 -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직원 명단과 자격증 사본을 포함한다) 및 시설 현황
 -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4.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 사회보장업무 또는 지역사회보장업무 수행실적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3년 이상 사회보장업무 또는 지역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3.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실적, 전문인력의 확보수준,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받을 자를 선정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사회보장급여법 제4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보장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3.6.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그 밖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습2]

4. 사회보장급여범의 보칙과 벌칙

4.1. 비밀유지의무(제49조))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9.>

1.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신청, 조사, 결정, 확인조사, 환수 등 급여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2.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2의 2. 제24조의 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 3.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4.2. 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제50조)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4.3. 신고포상금의 지급(제53조 2)

- ①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제22조 제1항의 부정수급자
 - 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단체·시설
- ② 보장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절차, 방법 및 홍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4.4. 행정기관 등의 협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5. 벌칙(제54조)

① 제31조 제1호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1. 7. 27.>.
 - 1. 제12조 제7항을 위반한 사람(7.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의 가구정보)
 - 2. 제29조 제8항(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사람(비밀유지의무)
 - 3. 제22조 제1항(사회보장급여의 환수조항, ① 수급에 따른 부정수급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주차 1차시 | | | |
|-----------|---|--|--|
| 강의주제 | 사회보험법의 이해 | | |
| 학습 목표 | 1. 사회보험법의 의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국민연금법의 입법배경,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배경과 가입대상자 등 주요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보상내용을 타 사회보험법과 비교할 수 있다. | | |
| 학습 내용 | 1. 사회보험법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학습1]

1. 사회보험법

- 사회보장은 여러 가지 제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프로그램이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강제가입 보험방식을 사용하여 사회구성원이 겪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공동으로 대비하는 제도
- 사회보험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소득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
- 정부가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거나 감독하며 필요한 재정과 급여는 법률에 명시
- ① 사회보험의 정의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임

② 사회보험은 개인이 임의 가입하는 사(민간)보험과는 엄격한 차이가 존재

| 구분 | 사회보험 | 민간보험 |
|-------------|--------------------|-------------|
| 가입 | 강제성 가입 | 개인자율 |
| 보험료 부과기준 | 소득수준 | 위험과 급여수준 |
| 보호의 적절성 | 최저 소득보호 많은 소득보호 가· | |
| 강조 | 사회적 적절성 | 개인적 적절성 |
| 급여 근거 | 법에 따라 결정 | 개인계약에 따라 결정 |
| 운영형태 | 정부 독점 | 경쟁 |
| 비용 부담 | 공동부담 원칙 | 개인부담 |
| 완전한 재정 준비 | 완전한 재정 준비 필요하지 않음 | |
| 목적·결과 관련 의견 | 다양함 | 대체로 일치 |
| 투자 방식 | 대체로 정부 업무 | 주로 민간 분야 |
| 인플레이션 효과 | 물가상승 반영 (정부 보상) | 인플레에 아주 약함 |

- ③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
 - 보편적 적용 원칙 : 강제성
 - 원칙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해야 함
 - 불평등 완화, 소득재분배 효과 있어야 함
 - 저소득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
 - 기여의 형평성 또한 유지해야 함
- ④ 사회보험의 종류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⑤ 사회보험 급여의 종류
 - 현금

2.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의 주요 연혁

- 1973.12.24.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지만 오일쇼크 등 경제적위기와 사회적 호응의 부족으로 연기됨
- 1986.12.31. 국민연금법 제정(1988.1.1. 시행)

2.1. 목적(법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 정의 등(법 제3조) * 발췌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7., 2015. 1. 28., 2016. 5. 29., 2023. 3. 28.>

-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 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 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 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13.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 14.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 1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 16.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2.3. 국가의 책무(법 제3조의 2)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4.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법 제4조)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 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2.5. 가입 대상(제6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6. 가입자의 종류(제7조)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며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2.7. 사업장가입자(제8조)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이하 퇴직연금 등수급권자라 한다),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2. 삭제
- ②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2.8. 지역가입자(제9조)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가입 자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배우자

- 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2.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3.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4.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5.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7.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임의가입자(제10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 1. 사업장가입자
 - 2. 지역가입자
-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2.10. 임의계속가입자(제13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 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 (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 나.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 ②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 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 5. 29.>
 - 1. 사망한 때
 -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3. 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2.11. 급여의 종류(제49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 (출생연도에 따라 차등)

2. 장애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결정 기준일부터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

3. 유족연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4. 반환일시금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사망한 때, 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학습2]

3.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연혁

- 1963.12. 의료보험법 제정
- 1988.1.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
- 1989.7. 도시지역 의료보험실시로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 진입
- 1999.2. 국민건강보험법 제정(2000.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2003.7. 직장과 지역의 건강보험 재정통합 운영 (실질적인 건강보험 완전통합)

3.1. 목적(제1조)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2. 정의(제3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 3.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 4.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3.3. 적용 대상 등(제5조)

-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 4. 직장가입자의 형제 · 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4. 가입자의 종류(제6조)

-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제외
 -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3.5. 자격의 취득(제8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 3.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4.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3.6. 자격의 상실(제10조)

-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 5. 수급권자가 된 날
-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3.7.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제42조)

-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3.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제4조)

건강보험전책심의위원회의 업무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관련조사연구와 국제협력,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위탁받은 업무가 있다.

-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를 두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3.>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목적(제1조)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2. 국가의 부담 및 지원(제3조)

산재보험의 기본적인 특징은 개별실적요율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개별실적에 따라 산재 발생이 높은 사업장은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산재발생이 낮은 사업장은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결정한다.

-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 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3. 정의(제5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 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4.4. 근로복지공단의 설립(제10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4.5.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제36조**)

- ①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11.>.
 - 1.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2.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 3.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4.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 5.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6. 상병(傷病) 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첫째,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둘째,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셋째,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의 요건 등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7.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 8. 직업재활급여 : 첫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 둘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 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 제12주차 2차시 | | | |
|-----------|---|--|--|
| 강의주제 | 사회보험법과 판례 | | |
| 학습 목표 |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배경과 주요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다. 판례의 개념과 의의를 서술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 관련 판례를 분석할 수 있다. | | |
| 학습 내용 | 1. 고용보험법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 판례의 개념과 의의 4. 사회복지법 관련 판례 | | |

[학습1]

1. 고용보험법

1.1. 목적(법 제1조)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정의(법 제2조)

-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 나.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 자라 한다)
-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 7. 직업안정기관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 8. 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학교의 방과후 학교강사,택배원,신용카드회원모집인,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 등).

1.3. 국고의 부담(제5조)

- ①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4. 제정 사유

적극적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실업예방 및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 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및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①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를 실시함
- ② 국가는 매년 고용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③ 고용보험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시간제근로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④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안정조치를 취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⑤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고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을 실시하는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⑥ 이직일 이전 18월동안 12월 이상 고용되어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①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함
- ⑧ 제4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구직급여
- ⑨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12개월 내에 제50조 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
-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 지시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 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되,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2분의 1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의 보험요율은 1,0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②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함
- ③ 고용보험은 1993년 제정되었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1.5. 고용보험의 기능

- ① 빈곤방지의 사회보장적 기능 고용보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을 당했을 경우에 실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빈곤의 증대를 완화시키는 사회 보장적 기능을 담당
- ② 사회적 연대증진의 정치적 기능 고용보험제도의 경험요율 등을 도입해 고용주가 고용안정을 유지토록 하여 실업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간의 일체감을 높여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키는 정치적 기능을 담당
- ③ 소득재분배 기능 실업급여 지급은 경기 불황 시 근로자의 구매력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유효 수요의 하락을 방지하여 경기에 대한 조절 기능을 수행하며,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하지만 실업발생의 확률이 높은 저소득계층에 주로 지원이 이루어져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
- ④ 불평등 예방의 사회적 기능 실업발생이 저소득층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재취업 촉진 등의 고용보험제도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예방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

1.6. 보험료(제6조)

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 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1.7. 적용 범위(법 제8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적용 제외(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9. 적용범위(동법 시행령 제2조)

- ① <u>법 제8조 단서</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1.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 (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 활동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 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1.10.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제23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1. 실업급여의 종류(제37조)

-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 ②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제64조)
 - 2. 직업능력개발 수당(제65조)
 - 3. 광역 구직활동비(제66조)
 - 4. 이주비(제67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1. 목적(법 제1조)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정의[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

- 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3.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제3조)

-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제4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 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 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2.5. 장기요양기본계획(제6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노인 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6. 장기요양보험(제7조)

-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2.7.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제12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라)

2.8.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제14조)

- ①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신청인의 심신상태
 -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지체 없이 공단에 조사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9. 등급판정 등(제15조)

- ①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 2020. 3. 31.>

2.10.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23조)

-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가급여
 -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3. 특별현금급여
 -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 요양급여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11. 가족요양비(제24조)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 부터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12. 본인부담금(제40조)

-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②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부담한다.
 -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 1.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학습2]

3. 판례의 개념과 의의

- ① 판례란 선례가 되는 재판을 의미
- ② 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내린 판결임
- ③ 성문법주의 국가에서 판례는 법률과 동일한 구속력(효과)은 없음 법원성(法源性)은 부인
- ④ 다만, 유사사건에 대하여 상급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을 기속함으로 구속력이 있음
 -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선판례 구속의 원칙 적용되기도 함(대법원의 판결의 경우)
 - * 선판례 존중의 원칙
 - 구속력이 높다는 의미는 유사사건에 대하여 여러 번의 판결이 동일하게 적용된 경우
 - 법의 안정성 차원에서의 적용(원용)은 바람직하다고 봄
 - *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를 법으로 인정하는 불문법주의 국가
- ⑤ 그러나 타 사건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갖지 못함
 - 법관은 헌법,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 때문
 - 상급심의 판례가 반드시 원용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님

- ⑥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판례는 공익소송적 의미 부여
- ⑦ 사회복지법에 대한 판결은 국민 다수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3.1. 법원의 종류(법원조직법 제3조)

-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 1. 대법원
 - 2. 고등법원
 - 3. 특허법원
 - 4. 지방법원
 - 5. 가정법원
 - 6. 행정법원
 - 7. 회생법원
-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 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2.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제8조)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3.3. 최고법원(제11조)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3.4. 소재지(제12조)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4. 사회복지법 관련 판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처분취소 사례

- 1. [부산지법 2012.4.5, 선고, 2011구합4436, 판결 : 확정]
- 2. 【판시사항】
 - 구청장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딸 및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甲에게 지급하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 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 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딸 및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甲에게 지급하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급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충실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딸이 혼인하여 남편 소득으로 월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부양을 기피하여, 甲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보면, 甲에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4. 【전문】 5. 【원 고】 6. 【피 고】
- 7.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 8. 【변론종결】2012. 3. 8.
- 9. 【주 문】
 - ①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게 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처분을 취소한다.
 - ②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0.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11. 【이 유】

- ①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3. 9.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아오고 있다.
 - 나. 피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수급권 및 급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부양의무자를 조사한 결과, 원고의 딸인 소외인의 소득이 그 남편소득으로 인해 가구 총 소득 2,700,000원, 재산 107,973,069원으로 조사되어, 원고의 딸 및 사위를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판정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11. 6. 20. 원고가 받아오던 361,780원의 생계·주거급여를 133,620원으로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후 소외인이 자녀를 출산하자 별도의 서면 통지 없이 2011. 7. 20. 원고의 생계·주거급여를 242,930원으로 조정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②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비록 부양의무자로 딸과 사위가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혼 및 가정불화로 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딸과 사위가 원고를 전혀 부양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고, 법 제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또한 법 제5조 제1항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부양의무 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는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를 법 제5조 제3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같은 시행령 제5조 제4호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를 법 제5조 제3항의 "부양의무 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각 규정하고 있다.

- 2) 이러한 부양의무자의 정의, 급여의 기본 원칙, 수급권자의 범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보장기관 은 법 제29조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3)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딸인 소외인이 혼인을 하여 남편 소득으로 월 2,700,000원의 소득이 있고, 재산으로 107,973,069원 당을 소유한 사실, 원고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고 소유의 휴대전화로 소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온 사실, 피고가 소외인에게 원고를 부양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외인이 이에 답변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9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3. 5. 배우자 와 이혼을 하였고, 가정불화로 아들은 가출하여 가족과 연락이 끊겼으며, 소외인은 2006년 국민기초수급권자 신청에 따른 생활실태조사 당시 연락처나 거주지를 부모에 게 알려주지 않고 자신이 직접 안부연락을 하고, 부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고 진술한 사실, 소외인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현재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 원고를 부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 제34조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수급기관은 법 제23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급자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자나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도 있으므로, 수급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조사를 하여야 한다 고 해석되는 점, 원고의 딸이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 법 제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딸이 부양을 기피 하여 법 제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조 제4호에 따라 원고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법 제5조 제1항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③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판사 김상국(재판장) 윤이진 김병주

| 제13주차 1차시 | | | |
|-----------|--|--|--|
| 강의주제 | 공공부조법의 이해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
| 학습 목표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을 서술할 수 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수급권자와 수급자를 구별할 수 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 |
| | | | |
| 학습 내용 | | | |

[학습1]

1.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 공공부조는 선택적 사회복지정책
- 공공부조의 재원은 조세
- 공공부조 서비스 대상자는 자산조사를 거쳐야 함
- 사회적 취약계층의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
- 국가책임 원리
- 국가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
- 모든 국민은 생활이 어려울 때 국가에 생활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
- 최저생활의 보장을 국가가 해주어야 함
-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차별적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보충성의 원리 : 부족한 부분만 보충

- 자립조장의 원리 : 수급자의 잠재능력 개발 육성하여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신청주의, 보충적으로 직권주의 채택
- 공공부조는 세대별 기준
- 현금부조의 원칙. 예외적으로 현물급여 지급
-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1999년 폐지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1977년 의료급여법 제정
- 2005년 긴급복지법 한시적 운영, 후에 영구법으로 전환

1.1. 공공부조의 원리

① 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민의 복지증진이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소임으로 인식됨에 따라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 최저한의 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며, 국민이 생존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모든 나라에서 헌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사회복지관계법에 명시되어 있다.

② 국가책임의 원리

공공부조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공공부조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과 재정제도상의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공공부조에 필요한 비용도 모두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빈곤에 대하여 국가가 무조건 또는 무제한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③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공공부조의 보호수준은 최저한의 생활 즉, 최저한의 요구가 충족되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부조제도가 유지되기 위하여 불가결한 원리로서 멀리 영국의 구빈법 시대부터 계속됐다. 생활능력이 없어 공공 부조를 받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어 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잘산다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납세자들의 반발을 일으키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④ 무차별 평등의 원리

공공부조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국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한다.

⑤ 보충성의 원리

국가에 의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보충의 차원에서 제공된다. 즉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재산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⑥ 자립조장의 원리

공공부조는 궁극적으로 보호 대상자의 자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현금이나 현물부조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기회의 제공과 직업훈련이 부조의 한 형태로써 제공되는 것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 ① 목적(제1조)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9년 9월에 제정, 공포되었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 ② 제정이유
 -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③ 주요골자

- 가.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소득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 공제 등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둠(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
- 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 다.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함(법 제6조)
- 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 제9조)

- 마. 생활보장에 관한 기획·조사 ·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 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기준 등을 명문화하여 민간의 민주적 참여와 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함(법 제20조)
- ③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 구분 | 생왈보호법 | 국민기조생왈보장법 |
|--------------|--|--|
| 복지이념 | 온정꾸의꺽 보호의 제공 | 권리성강화, 생산적복지이념 구현 |
| 수급자구분 |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거택·까왈보호대앙까로 구분 | 수급짜 구분 폐끼,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까는 쪼건부 급여 |
| 우급까 신청요건 | -부양의무자 요건(법정요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안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요건 동일 -오득과 깨산의 오득완산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 급여수준 및 종류 | -생계보호(거택보호까에게 만 끼급) -까왈보호 -의료·교육·깡제·해산보호 | -생계급여(근로능력까는 쪼건부) -꾸거급여 및 긴급급여 인설 -까왈급여(쪼건부급여 등 공제) -의료·교육·해산·깡제급여 동일 |

출처 : 홍봉수 외(2020).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3. 수급권자와 수급자

3.1. 수급권자와 수급자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3.2. 생활보장위원회(법 제20조)

-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 4.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5.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 6.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명 이내
-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⑤ 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습2]

4. 수급자의 급여

4.1. 급여의 기본원칙(법 제3조)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4.2. 급여의 기준 등(법 제4조)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3.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법 제6조)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삭제

4.4.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법 제6조의 2)

-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4.5. 소득인정액의 산정(법 제6조의 3)

- 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 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 1. 근로소득
- 2. 사업소득
- 3. 재산소득
- 4. 이전소득
- ② 제2조 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 2. 금융재산
 - 3. 자동차
-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 ·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급여의 종류(법 제7조)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계급여
- 2. 주거급여
- 3. 의료급여
- 4. 교육급여
-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 7. 자활급여

-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삭제
- 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며,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 주거급여법(2014.10.1.시행. 국토교통부)
-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으로 한다
- ⑧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동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

- 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 ⑨ 해산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⑩ 장제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
-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4.7. 부양능력 등(법 제8조의 2)

-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u>부양능력이 없는</u> 것으로 본다.
 -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3.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u>부양을 받을 수</u> 없는 것으로 본다.
 -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 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5. 부양의무자가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6.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4.8. 급여의 신청(법 제21조)

-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 2를 준용한다.
-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 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 3.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 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 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놀이지 아니하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⑦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4.9.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① 급여 변경의 금지(제34조)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 ② 압류금지(제35조)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지정 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③ 양도금지(제36조)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④ 신고의 의무(제37조)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 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동법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4.10. 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6. 5. 29.>

-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 시설
-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13주차 2차시 | | |
|-----------|---|--|
| 강의주제 | 의료급여법과 긴급복지지원법 | |
| 학습 목표 | 1. 의료급여법의 의의와 입법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와 급여의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다. 3. 긴급복지지원법의 의의와 입법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4. 수급권자와 지원종류 및 절차를 도식화할 수 있다. | |
| 학습 내용 | 1. 의료급여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2. 수급권자와 급여 내용 3. 긴급복지지원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4. 수급권자와 지원종류 및 절차 | |

[학습1]

1. 의료급여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의료보호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의료문제 해결과 국가사회에 공헌하였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해구호법 상 이재민, 18세 미만 입양아동,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노숙인 등 보호 위한 법이다.

1.1. 목적(법 제1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2. 정의(법 제2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2.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 3.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2. 수급권자와 급여 내용

2.1. 수급권자(법 제3조)

-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 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 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8. 5 ·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 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난민에 대한 특례(법 제3조의2)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2.3. 의료급여의 내용 등(법 제7조)

-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진찰·검사
 - 2. 약제(藥劑) · 치료재료의 지급
 -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 4. 예방·재활
 - 5. 입원
 - 6. 간호
 -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4. 의료급여증(법 제8조)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을 갈음하여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 ②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 급여증명서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하 "의료급여기관"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수급권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의료급여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 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 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8.>
- ⑤ 누구든지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8.>
- ⑥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및 의료급여증명서의 서식과 그 신청·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2.5. 의료급여의 변경(법 제16조)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밝혀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2.6. 수급권의 보호(법 제18조)

- ①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3. 3. 28.>
- ② 제12조의 2 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3. 3. 28.>

2.7. 구상권(법 제19조)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2.8.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시행령 제3조)

① 1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사람, 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9. 의료급여기금(법 제25조)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국고보조금
 -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습2]

3. 긴급복지지원법의 의의와 입법 배경

긴급복지지원법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3.1. 목적(법 제1조)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

3.2. 정의(법 제2조)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8. 12. 11.>

-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3. 제정이유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지원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3.4. 주요 내용

- 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법 제12조) 긴급지원의 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시·군·구 소속공무원,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각 시·군·구에 두도록 함
- 나. 사후 조사 및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법 제13조 내지 제14조)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가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지원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의 사후조사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지원중단이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5. 기본원칙(법 제3조)

-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3.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4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 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수급권자와 지원종류 및 절차

4.1. 수급권자(긴급지원대상자, 법 제5조)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4.2. 외국인에 대한 특례(법 제5조의 2)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4.3. 지원요청 및 신고(법 제7조)

-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
-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2021. 7. 27.>

4.4. 위기상황의 발굴(제7조의 2)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5. 현장 확인 및 지원(법 제8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 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4.6.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법 제9조)

-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 가.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나.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다. 주거지원 :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마.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바. 그 밖의 지원 :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 와의 연계 지원
 -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7. 긴급지원의 기간(법 제10조)

- ① 생계지원 긴급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리고 그 밖의 지원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호 다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 ②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른 교육지원도 한 번 실시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나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같은 호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네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연장에 관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기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 제14주차 1차시 | | |
|-----------|---|--|
| 강의주제 | 사회서비스법과 사회복지사업법 | |
| 학습 목표 | 사회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및 배경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공공 및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비교할 수 있다. | |
| 학습 내용 | 1. 사회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및 배경 3.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4. 공공 및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 | |

[학습1]

1. 사회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

1.1. 목적(법 제1조)

사회서비스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정의(법 제2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 3.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법 제4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이하 "공공성등"이라 한다)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4.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 방안
 -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 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 7.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 8.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 및 개선 방안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제정이유

사회서비스 이용의 활성화, 이용자의 권익 보호,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및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1.6.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법 제7조)

-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한 시·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시·도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법 제10조)

- ① 시·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의 제공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 10. 그 밖에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그 밖에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및 배경

2.1. 목적(법 제1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24.>

2.2. 기본이념(법 제1조의 2)

-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2.3. 정의(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아동복지법」
 - 다. 「노인복지법」
 - 라. 「장애인복지법」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 바. 「영유아보육법」
-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 「입양특례법」
-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 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4.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법 제4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 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5.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법 제5조)

-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2.6. 시설설치의 방해 금지(법 제6조)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산화(법 제6조의2)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 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학습2]

3.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3.1.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법 제9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 2.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3.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3.2.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법 제11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 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 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법 제13조))

-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4. 사회복지의 날(법 제15조의2)

-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5. 법인의 설립허가(법 제16조)

-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6.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6항·제7항, 제22조, 제23조 제3항, 제24조, 제26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공 및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

- 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란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떻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이용자에게까지 전달되는지 를 알려주는 체계임
- ② 주로 공공부문(Public sector)과 민간부문(Private sector)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고, 민관협력체계라고 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이 상호 협력하는 체계로도 설명함
- ③ 간단히 말하면,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에 어떠한 단계를 거치는지를 알려주는 것
- ④ 전달체계를 구조기능적으로 보면,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체계는 기획, 지원과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전달체계 시스템이고, 집행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선 동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컫는 것임. 또한 운영주체별로도 분석할 수 있는데, 공적과 사적 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적전달체계는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고, 사적전달체계는 사회복지민간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임(사회복지개론, 박용순, 학지사)
- ⑤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참고. 전게서)
 - 1. 전문성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업무는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
 - 2. 적절성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는 이용자의 욕구충족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 3. 포괄성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는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제공
 - 4. 지속성의 원칙 : 이용자의 문제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
 - 5. 통합성의 원칙 : 이용자의 문제는 복잡하고 문제 간 상호연관성이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
 - 6. 평등성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는 이용자에 대하여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제공

| 제14주차 2차시 | | |
|-----------|---|--|
| 강의주제 | 대인서비스법 등 개별 서비스법의 이해 | |
| 학습 목표 | 1.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기초연금법의 의의와 특징을 서술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의의와 주요 서비스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3. 영유아보육법과 정신보건법의 의의와 대상별 사회복지서비스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대해 법의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을 설명할 수 있다. | |
| | | |
| 학습 내용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기초연금법 장애인복지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 |

[학습1]

1.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기초연금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기초연금법의 내용 중에서 주요 골자만을 소개함

1.1. 아동복지법

1) 제1조(목적)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 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7의 2. 아동학대관련 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9. 삭제
-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5)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6)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4. 삭제 <2014. 1. 28.>
-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8)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 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아동복지서비스 모형

아동복지서비스 모형에는 아동복지서비스의 모형(Kadushin의 3'S)으로,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대리적 서비스(substitutes service)가 있다.

① 지지적 서비스

가족과 부모 자녀의 관계가 손상, 긴장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의 능력을 지지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로 지역아동센터, 상담사업, 미혼부모를 위한 사업 등

② 보충적 서비스

가정 내의 부모양육이 부적절한 경우, 부족한 측면을 보충해 주는 서비스, 소득 보완사업, 보육사업, 장애아동·비행아동복지사업, 학대 및 방임아동의 보호사업 등

③ 대리적 서비스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양육보호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대신해 주는 서비스, 가정위탁사업, 입양사업, 보호사업 등

1.2. 노인복지법

1) 제1조(목적)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본 이념)

-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 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제1조의2(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중략)

4) 제2조(기본이념)

-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제6조(노인의 날)

-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 ②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 ③ 삭제 <2011. 8. 4.>
-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노인빈곤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기초연금법」을 2014년 5월 20일에 제정 및 시행하였다.

1) 제1조(목적)

기초연금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기초연금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 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3)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 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항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 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 2.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3.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③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 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④ 감액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 ①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을 할 때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장애인복지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2.1. 장애인복지법

1)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 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 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을 말한다.
-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중략)

3)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4) 제4조(장애인의 권리)

-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 ②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5)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6) 제8조(차별금지)

-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 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제10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9) 제20조(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각 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0)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⑨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 2.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3.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① 제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한부모가족지원법

1) 제1조(목적)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4조(정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마. 가목~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자

1의 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2)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 1. 출산지원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신·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 한정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 가. 제4조 제1호의 모
 - 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
 - 다.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 2. 양육지원시설 :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 3. 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 4. 일시지원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운영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출산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 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학습2]

3. 영유아보육법과 정신건강복지법

3.1. 영유아보육법

1)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3) 제3조(보육 이념)

-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4) 제4조(책임)

-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3.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 하는 어린이집
-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6) 제15조의 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 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제15조의 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 4 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5조의 4 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 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3.2.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복지법)

1) 제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본이념)

- 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 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 (이하 자의입원 등이라 한다)가 권장되어야 한다.
- ⑥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⑦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 ⑧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⑨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제3조(정의)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 나. 제15조 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 시설을 말한다.
-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제15조의 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4.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법 제1조)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
- 2.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3) 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 5.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 6.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 7.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 8.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한 경우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 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모금회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④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할 수 있다.
- ⑤ 모금회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제20조(배분기준)

-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 2. 배분한도액
 -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 4. 배분심사기준
 - 5. 배분재원의 과부족(過不足) 시 조정방법
 - 6.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 7. 그 밖에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
- ②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6) 제21조(배분신청)

- 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0조의 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4.2. 다문화가족지원법

1) 목적(법 제1조)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 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 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다.

4)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 이민자 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 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 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7)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주요 내용

- 가.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법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법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법 제12조)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